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 군 보

제1413호

2026년 5월 15일(금)

- 차 례 -

### 입법예고

제2026-826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 1

### 공고

제2026-823호 보상계획(변경) 열람공고[군도9호선(평화전망대 입구 일원) 선형개량공사]- 95

## 입법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6-826호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강 화 군 수

### 1. 개정 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부료율 근거 규정 신설(안 제28조)

- 사회경제적기업에 대한 대부료율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 신설(안 제3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등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급상승시 감액 대상 확대(안 제34조)

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확대(안 제35조)

마.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2·3급 관사 통합 운영(안 제51조)

- 바.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52조)
- 사용자 부담: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 지자체 부담: 건물 설비, 기본비품의 구입·교체·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비용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2026. 5. 15. ~ 2026. 6. 4.(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화군수(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총무과 재산관리팀)
  - 전화/팩스: (전화) 032-930-3272 / (팩스) 032-930-3633

5. 공청회 개최계획: “개최계획 없음”

6. 붙임: 일부개정안 및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끝.

강화군 조례 제 호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관리사무의 위임)”을“(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처분에 관한”을 “관리·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5호의 사항”을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인”을 “민간위원인”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을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본문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공유재산 관리대장)”을“(공유재산의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대장”을 “대장(臺帳)”으로 한다.

제7조 중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을 “현황 등을”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

다.

제8조제1항 중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있는지의 여부”를 “있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필요한”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시”를 “대부 시”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를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의”를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를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로 한다.

제9조 중 “절감하여야”를 “줄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리 계획”을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를 “확정되거나 변동된 경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대하여 아무런”을 “아무런”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찰”을 “일반입찰”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하여 사용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해 관계”를 “위하여 관계”로, “대하여 사용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호 중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

산제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연간사용료·납부방법”을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을 “관리위탁을 받”으로, “전대”를 “전대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비용은 전대 받”을 “관리비용을 전대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료되는”을 “끝나는”으로,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갱신 신청을 하여야”를 “갱신을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사회에 대한”을 “지역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위탁기간의”를 “관리위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태만히”를 “소홀히”로, “해지하고”를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하여 사실상”을 “사실상”으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내의”를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2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관련”을 “지원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이전하는”을 “이전(移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역내”를 “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버섯류 산나물류”를 “버섯류·산나물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강화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중 “사용 허가된”을 “사용허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석시가라 함은”을 “원석시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전용”을 “전용(專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해당건물”을 “해당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부지”를 “해당 부지”로, “내”를 “안”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4조 중 “이상 증가하여”를 “이상”으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차연도 부터”를 “2차연도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중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힘써야”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군의 필요에 따라”를 “군이 필요하여”로, “계약시”를 “계약 시”로, “재산 명도일”을 “재산명도일”로 한다.

1의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를 “인건비,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내의”를 “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식산업센터내”를 “지식산업센터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투자지역내”를 “투자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를 “용지 안”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에 따르”를 “수의계약으로 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을 “폐도·폐구거(폐도랑)·폐제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시설 부지상”을 “산업시설부지상”으로 한다.

제42조 중 “이바지”를 “기여”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도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를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이상을”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형설계”를 “외형 설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청사주변”을 “청사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관련”을 “직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상”을 “별표”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종합 청사화”를 “종합청사화”로 한다.

제50조 중 “군수·부군수, 군 소속직원”을 “부군수, 군 소속 직원”으로, “위하여 소유하는”을 “위하여 소유(또는 임차)하는”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 등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을 “군수는 관사가”로 한다.

제58조 중 “등재 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산”을 “정산(精算)”으로 한다.

제60조 중 “사용도중”를 “사용 도중”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에 대한”을 “징수”로 한다.

제64조의 제목“(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닉 재산”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허위서류”를 “거짓서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닉 재산”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지급 대상”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을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인의”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3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 ----- ----- ----- ----- 관 리·처분 ----- -----.</p>
<p>제4조(심의회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심의회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4. 삭제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p>	<p>제4조(심의회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제5 호 2. ----- 취득·처분  5. ----- 대하여 -- -----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p>	<p>제4조의2(구성 등) ① ----- ----- ----- ----- ----- ----- 성별을 고려하여</p>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  
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위  
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하되, 위  
촉직 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가 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  
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생략)

④ (생략)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  
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구성-----  
-----.

② -----  
-----  
----- 민  
간위원인 -----  
--- 호선(互選)한다.

③ ----- 다음-----  
-----  
---. ----- 민간위원-----  
-----.

1. 2. (현행과 같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개의(開議)하고-----  
-----.

④·⑤ (생략)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1회 공개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5.·6.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의 대장) -----  
-----  
-----  
----- 대장(臺帳)-----  
-----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  
----- 현황 등을 -----  
-----  
----- 연 1회 -----.

제8조(실태조사) ① -----  
-----  
-----  
-----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있는지
-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 3. ~ 5. (생략)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7.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  
-----  
-----  
-----  
대부 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  
---

- 1. (현행과 같음)
- 2. -----  
----- 안의 -----
- 3. ~ 5. (현행과 같음)

④ -----  
-----  
-----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의 집단화) -----  
-----  
-----  
-----  
----- 줄여야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2 -----



② (생 략)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 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 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관 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20조의3(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생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사용허가하는 -----  
-----  
----- 아무  
런 -----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  
----- 일반  
입찰-----  
각 호-----.

1. ----- 사  
용허가하는 -----
2. -----  
----- 위하여 관  
계 ----- 사용허  
가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지역특산품의 범위) --  
-----  
-----  
-----  
-----

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생 략)
-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

-----.

- 1. (현행과 같음)
- 2. -----  
-----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  
-----  
-----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  
-----.

② -----  
관리위탁을 받-----

----- 전대받아 -----

③ -----  
-----  
-----  
-----  
-----.

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삭 제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관리비용을 전대받-----

⑤ 일반입찰-----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

----- 끝나는 -----

----- 다음-----

갱신을 신청하여야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

② -----

--- 관리위탁기간 -----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  
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  
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 4. (생략)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  
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  
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하고 재산의 환수(還收)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  
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  
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  
호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에 대부·매각이 가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  
-----  
-- 소홀히 -----  
-----  
----- 해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사실상 -----  
-----  
-----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  
· 매각 대상 등) -----  
-----  
-----  
-----  
-----

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 3. 4. (생략)
-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 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효율)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1. (생략)
-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3.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

- 1. (현행과 같음)
- 2. -----  
-----  
-----  
----- 안  
의 -----
- 3. 4. (현행과 같음)
- 5. -----  
----- 산업단지 안-----  
--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효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 2. ----- 위하  
역 -----
- 3.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생략)
-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경우
-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

- 1. (현행과 같음)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  
-----  
-----  
-----
- 4. -----  
-----  
----- 지원 관련 -----  
-----
- 5. -----  
-----  
-----  
----- 이전(移轉)하는 -----  
-----
- 6. -----  
-----  
----- 지역 -----

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  
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  
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및 약초  
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안-----

-----

7. -----

-----

----- 지원 대상 -----

-- 버섯류·산나물류 -----

-----

-----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용하는 경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  
용하는 경우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합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  
----- 사용허가  
된 -----  
-----  
-----  
-----  
-----  
-----.

② ----- 원석시가란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관련 단체  
-----  
-----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을 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학교운동장 등 자치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물의 공용(共用)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자 또는 대부분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 전용(專用)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1. ----- 해당 건물 -----  
 -----  
 -----  
 -----



④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 년도의 대부료 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 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신 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이상 -----  
----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  
-----  
-----  
----- 2차연도부터 -----  
-----  
-----.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대부계약서) -----  
-----  
----- 작성  
·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힘써





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  
역내의 재산

4. 군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  
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  
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  
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와 접한 경우

4.·5. (생 략)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  
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

----- 투자지  
역 안-----

4. -----  
----- 용지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수의계약으로 하-----  
-----  
-----.

2. -----  
폐도·폐구거(폐도랑)·폐제  
방-----  
-----  
-----  
-----  
-----

3. ----- 산업시설  
부지상-----  
-----  
-----  
-----  
-----

4.·5. (현행과 같음)

제42조(공유임야관리) -----  
-----

림(造林)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

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고  
려하여 -----  
-----  
-----.

② -----  
----- 재해·무너  
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  
후·협소·위치 -----.

제46조(청사의 부지) -----

----- 이상 ---  
-----  
-----  
----- 고려하여 -  
-----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  
-----  
-----  
-----.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 6. (생략)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에 따른다.

③ (생략)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생략)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官舍)”란 군수·부군수, 군 소속직원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 고려한 -----  
-----

2. -----  
-----  
외형 설계

3. ~ 6. (현행과 같음)

7. 청사 주변-----  
-----

② -----  
-----  
-- 직무 관련 -----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청사화-----  
-----  
-----  
-----.

제50조(정의) -----  
----- 부군수, 군 소속 직원 -----  
-----  
----- 위하여 -----  
소유(또는 임차)하는 -----.

<삭 제>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2조(사용허가) -----  
-----  
----- . <단서 삭제>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삭제>

<삭제>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 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갖춰 놓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삭 제>

<삭 제>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 등

제5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관사가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  
-----  
-----  
----- 기록·관리 -----  
-----.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  
-----  
--- 경우, -----  
-----.

② -----  
-----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  
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직원  
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  
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  
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64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정산(精算)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변상조치) ----- 사용 도중  
-----  
-----  
-----  
-----  
-----.

제62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징수 -----  
-----  
-----  
-----.

1.·2.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은닉된 공유재산 -----  
-----  
-----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  
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  
다.

가. (생략)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생략)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  
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  
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  
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  
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1.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거짓서류-----  
-----  
----- 소유권이전등기-----  
-----

2. (현행과 같음)

② ----- 은닉된 공유재산 --  
-----  
----- 있으  
며, -----  
----- 지급대상--  
-----.

③ (현행과 같음)

④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인의 -  
-----  
-----  
--.

<삭제>

강화군 공고 제2026-826호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강 화 군 수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 (현행) 소속 공무원 → (개정) 소속 직원(안 제34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입법예고 기간: 2026. 5. 15. ~ 2026. 6. 4.(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화군수(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총무과 재산관리팀)
- 전화/팩스: (전화) 032-930-3272 / (팩스) 032-930-3633

#### 5. 공청회 개최계획: “개최계획 없음”

#### 6. 붙임: 일부개정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강화군 규칙 제 호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군본청:”을 “강화군 본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회:”를 “강화군의회:”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실지”를 “실제”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를 “화재 및”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을 “있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회계간”을 “회계 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등기수속 등)”을 “(등기절차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건축물 관리대장”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기사항증명서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관리대장

제23조제2항 중 “매년말”을 “매년 말”로 한다.

제31조 중 “토석가격평정조서”를 “채광물가격평정조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을 “(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전통지서”를 “사전 통지서”로, “사전통지에”를 “사전 통지에”로 한다.

제33조 중 “청사신축계획서”를 “청사 신축계획서”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51조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을 “제50조에 따른 사용 대상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 대상 공무원”을 “사용대상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사관리대장”을 “관사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사 관리업무 담당과장”을 “관사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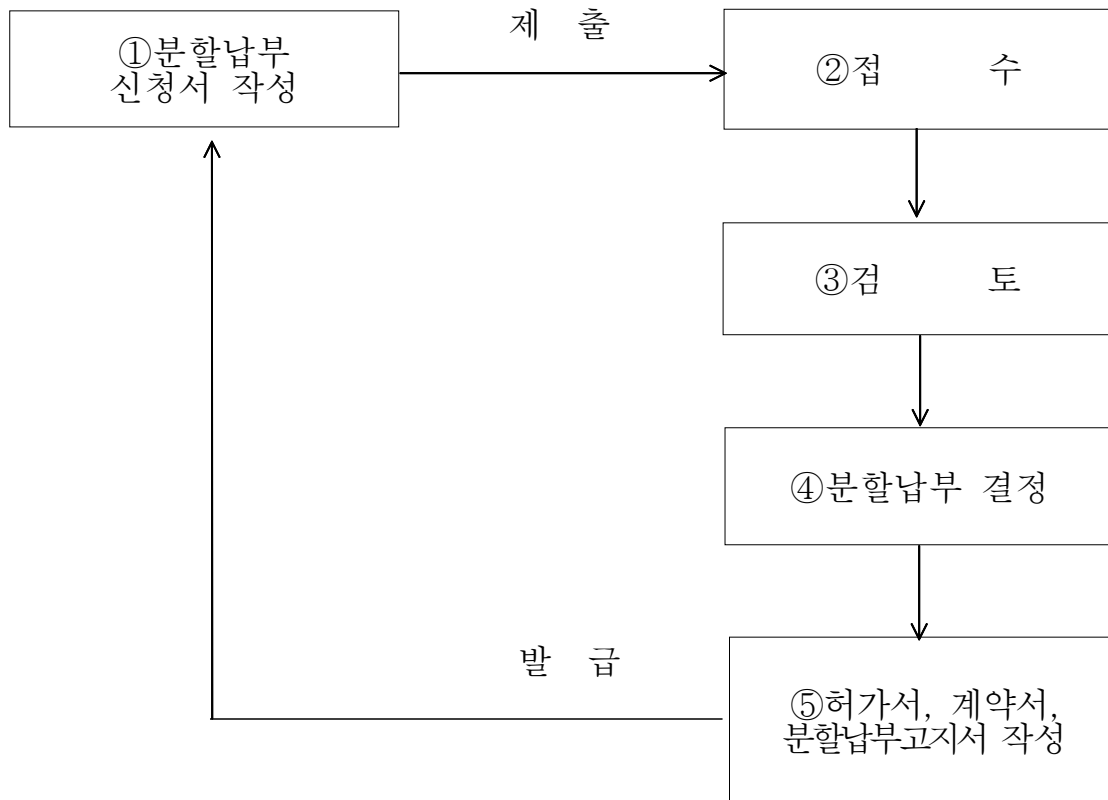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공유재산 [ (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 상 금 ]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 년 월 일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신청 사유	분납방법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을(를) 나누어 내려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뒤쪽)

< 업무처리 절차도 >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로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가입)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강화군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래상태**를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에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군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에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										군										읍면										리										번지									
물건 표시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번호			기 타	명칭			부속 사항																																				
		지목				종목				구조																																							
		면적	전 체	m <sup>2</sup>		용도				형식																																							
			대부사용	m <sup>2</sup>		면적	전 체	m <sup>2</sup>			수량																																						
				m <sup>2</sup>			대부사용	m <sup>2</sup>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 (갱신)년월일 허가	기 간						대 부 사 용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년 월 일	수 월 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일																																										

[별지 제5호서식]

##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시 군 동 읍 면 리						번지					
차수 물건	토지	지목			건 물	종목			부속 건물				
		지척	총면적	m <sup>2</sup>		구조				전체 차수	m <sup>2</sup>		
			차수면적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척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7호서식]

##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계명:

이동년월일 연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도	구조	전 기		증		감		증감 사유	등기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등)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 공유재산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재산 종류	코드 번호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 년도	경과 연수	토지 등급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단가	평가액		

(주) ○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작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 ] 유상 대부계약서  
[ ] 무상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강화군수(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1개월 미만 일수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율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가입)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래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

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_\_\_\_\_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_\_\_\_\_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_\_\_\_\_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 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이의결정)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수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변제

제5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강화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의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맞게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강 화 군 수 (인)

(양수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	연간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예상)(원)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

[별지 제15호서식]

###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단위: m<sup>2</sup>,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1건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sup>2</sup>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sup>2</sup>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_\_\_\_\_

(단위: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  
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  
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  
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_\_\_\_\_

(단위: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7호서식]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토 지)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 재산	부속 서류	작성차	확인
		중분류			구 분	색 인
		소분류			등기사항증명서	
		세분류			토지대장등본	
소재지 :						

지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사항		
	m <sup>2</sup>				년도	내 용	금 액
	현 재 :						
	m <sup>2</sup>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변동사항	
								취득금액	관 리 청	
								전소유자	가 액	
								등기년월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 건 물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연면적	취득시 : m <sup>2</sup>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투자사항		
	현재 : m <sup>2</sup>				년도	내용	금액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가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수	단면적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공 작 물)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명 칭	구조형식	수 량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사항증명서	
		소분류						건축물관리대장	
		세분류						배 치 도	

이동년월일	이동사유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비 고	기재연월일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연월일	(인)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임 목 죽)

작성 자		확 인	
구	분	색	인
등기사항증명서			
배 치 도			
평 면 도			

관리자 :		대분류				부속 재산				부속 서류
	구									
	분	중분류								
소재지 :		소분류								
		세분류								

수		종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관	리	비	투	자	상	황	
본		수																	
식재 상황	년	월	일																
	본	수																	
	면	적																	
	식	재	자																

임		대		상		관		리		취		득		상		수		의		상		비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임	대	연	월	일	전	소	유	자		변	동	사	항											
임	대	기	간		등	기	년	월	일	관	리	청												
					등	기	번	호		가	액													
					등	기	목	적																

재산재평가

년	월	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감 이동상황

년	월	일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증		감		현		등		기	록	대	조	비	고	
											수	가	수	가	수	가	수	가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선 박)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	재산	부속	서류	작성 자		확 인	
		중분류					구	분	색	인
		소분류					등기사항증명서			
		세분류					배치도			
		소재지 :					평면도			

주요설비및속구	용도	깊이	m	항해구역	
명칭	개수	선적항	넓이	m	최대탑승인원
		등록년월일	길이	m	착수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공사항		비고
년도	내용	금액	취득년월일		년월일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재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부 속 서 류			
사 용 목 적			

종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sup>2</sup>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 용 기 간	부 터 까 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		감		현 재		기 록	대 조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기 타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

작성 자		확 인	
부 속 서 류		연 혁	

재 산 관 리 관			연월일	방 법	금 액	소유자			
중 목		취 득							
등 록 번 호									

	년월일	문서대호	증감사유	증 가		감 소		현 재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 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내 용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	--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

작성 자		확 인	
부 속 서 류	명 칭		
	주 소		
	사업내용		
	자 본 금		
	설립년월일		

주식등종류				
1주당 액면금액		총지분금액		
보관기관		재산관리관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동사유	

년 월 일	적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재원등)	기록	대조
		수량	납입금액	수량	납입금액	수량	납입금액			

##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1면

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	--	--------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18호서식]

##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 내역			현재 용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연월일	목 적	취득 당시 가격			

###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 5. 소유권 증명

### 6. 위치도 및 지적도

###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강 화 군 수 (인)

&lt;재산의 표시와 평가액&gt;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강화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재산은 강화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

## 은 닉 재 산 신 고 서

##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현재 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 2. 발견경위

##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된 균유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 청사 신축계획서

· 작성자:

· 확인자:

## 1. 군 청사현황

①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 원 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 )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2. 신축계획

①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m <sup>2</sup> (국·공유지 m <sup>2</sup> , 사유지매입 m <sup>2</sup>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m <sup>2</sup>	m <sup>2</sup>	구조	m <sup>2</sup>	구조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시 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진 일정	추진 상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2호서식]

### 관사 관리대장

(관리번호: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 층
	건 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3호서식]

### 관사사용 신청서

- 1. 사용신청인(직위):
-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사용신청자 환경조사서

1. 성 명:
2. 강화군 최초 임용일자:
3. 임용 구분: 신규 / 전입 (해당사항에 ○표)
4. 관사 사용여부: 사용 한 적 있음·없음  
(해당사항에 ○표)

3. 주 소 지:

4. 실제 거주지 주소:

5. 출·퇴근 환경

출·퇴근	전·월세	비 고

※ 해당란에 ○표

6. 출·퇴근 소요시간 및 수단(출·퇴근자만 해당)

- ┌ 소요시간:       시간
- └ 교통수단: 자가·버스·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략)</p> <p>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p> <p>1. 행정재산</p> <p>가. <u>군본청</u>: 업무주관과장</p> <p>나. (생략)</p> <p>다. <u>의회</u>: 의회사무과장</p> <p>2. 3.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p> <p>가. <u>강화군 본청</u>: -----</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강화군의회</u>: -----</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② (생략)</p> <p>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u>있으며</u>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 <u>있으며</u>, -----</p> <p>-----</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리책임) ① ~ ③ (생략)</p>	<p>제4조(관리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p>

략)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  
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 기재사항  
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  
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3. ~ 5. (생략)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  
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  
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  
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같음)

④ ----- 실  
제-----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감수인의 지정) -----  
-----  
-----  
-----.

1. (현행과 같음)
2. -----  
나이 -----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  
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  
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  
----- 화재 및 -----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의 지급) (생략)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균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3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일  
부 또는 전부의 용도를 폐지하  
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재  
산관리관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  
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용도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경  
우 회계간 이관이 수반되는지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12조(매각신청) -----  
-----  
-- 있는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회계 간 -----

여부

② (생 략)

제16조(가격평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② (생 략)

제19조(매수신청) ①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균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 7. 등기부등본
- 8. ~ 10.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생 략)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밖에 -----  
-----.

제18조(등기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매수신청) ①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건축물관리대장
- 7. 등기사항증명서
-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유재산 관리대장
- 2. 등기부등본
- 3. 건축물 관리대장
- 4. 5. (생략)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  
-----  
-----.

- 1. 공유재산관리대장
- 2. 등기사항증명서
- 3. 건축물관리대장
- 4. 5. (현행과 같음)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매년 말 -----  
-----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가격평정조서) -----  
----- 채광물가격평정조서-----  
-----  
-----.

제32조(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  
-----  
----- 사전 통지서-----  
-----  
----- 사전 통지  
에 -----  
-----.

제33조(청사의 관리) -----  
----- 청사 신축계획서-----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관사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입주 신고서 및 서약서를 관사 관리 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  
---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소속 직원-----  
----- . ----- 사용대상 소속 직원-----  
-----  
-----  
-----  
-----.

② ----- 관사 관리대장-----  
-----.

③ -----  
-----  
-----  
-----  
-----  
-----  
----- 관사관리업무 담당 과장-----  
-----.

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강 화 군 수 귀 하

공 고

강화군 공고 제2026-823호

## 보상계획(변경) 열람 . 공고 [군도9호선(평화전망대 입구 일원)선형개량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시행하는『군도9호선(평화전망대 입구 일원)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5.

### 강 화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위치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군도9호선(평화전망대 입구 일원)선형개량공사
	사업규모 및 기간	규모 : L=0.12km, B=15m 기간 : 2025월 7월 ~ 도로공사 완료시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강화군수(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보상사무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032-930-3470) <b>변경사항: 토지 이해관계인 누락에 따른 정정</b>
2. 보상대상물건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	
3. 보상계획열람	①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강화읍 강화대로 394) ☎ 032)930-3470 - 양사면사무소(양사면 전망대로 1398) ☎ 032)930-4289 ②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6. 5. 15.(금) ~ 2026. 5. 29.(금) (09:00~18:00)	

## 4. 보상의 시기.방법 절차

구 분	예정일정	주 요 내 용
감 정 평 가	2025/10월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 계획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및 통보	2025/11월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협의를 및 계약 체결	2025/12월부터	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를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협이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금지급 청구 및 지급 방법	2025/12월부터	보상금 지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종료 합니다. 단,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 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하며, 대금지급에는 행정 소요일이 필요합니다.
수용재결	2026/6월 예정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하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 5. 기 타

- ① 상기 보상계획은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상의 시기, 계획 일정, 보상의 내역 등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③ 물건조서의 경우 “공고대상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를 포함합니다.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변경) 열람공고 내역(토지)

○ 공사명 : 군도9호선(평화전망대 입구 일원)선형개량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지번	면적면적(㎡)	지목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읍·면	리	지번	공부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04-3	278	704-8	78	도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2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1-4	235	61-4	235	도	1/1	공	강화군			
3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1-8	252	61-8	252	담	1/1	공	강화군			
4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1-10	101	61-10	101	담	1/1	모·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54,동***호(부개동,무궁화빌라)	강****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	근저당권
5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04-4	63	704-4	63	도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6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84-2	69	84-2	69	도	1/1	공	강화군			
7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84-3	62	84-3	62	도	1/1	공	강화군			
8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83-3	63	83-3	63	도	1/1	공	강화군			
9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83-2	3	83-2	3	도	1/1	최·근	주문도리 **통·호			
10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1-2	493	61-12	182	담	1/1	모·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54,동***호(부개동,무궁화빌라)	강****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	근저당권
11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04-2	116	704-7	51	도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05	718	705-2	133	구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3-2	165	63-2	165	도	1/1	최·근	주문도리 **통·호			미등기
14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2	694	62-1	41	담	1/1	아·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길 29, ***동 ***호(현대아파트)	강****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흥리 ***·*(양사지점)	근저당권
15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04	2,484	704-6	126	도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3-3	13	63-3	13	도	1/1	조·철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	조·훈	경기도 안성시 비봉로 37, ***동 ***호(가사동, 안성푸르지오)	법정상속인
											조·혁	인천광역시 서구 용왕로131번길 31, ***동 ***호(신원동, 장인하이츠빌라)	법정상속인	
											조·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912번길 **	법정상속인	
											조·숙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17, ***동 ***호(한진에버빌)	법정상속인	
											조·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9번길 6, ***호(도화동, 연엑스파크)	법정상속인	
											조·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로 33, ***동 ***호(역서동, 경원역로빌라(비티푸르지오1단지))	법정상속인	
17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3-1	129	63-4	40	전	1/1	조·철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	조·훈	경기도 안성시 비봉로 37, ***동 ***호(가사동, 안성푸르지오)	법정상속인
											조·혁	인천광역시 서구 용왕로131번길 31, ***동 ***호(신원동, 장인하이츠빌라)	법정상속인	
											조·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912번길 **	법정상속인	
											조·숙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17, ***동 ***호(한진에버빌)	법정상속인	
											조·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9번길 6, ***호(도화동, 연엑스파크)	법정상속인	
											조·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로 33, ***동 ***호(역서동, 경원역로빌라(비티푸르지오1단지))	법정상속인	
18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80-1	96	80-1	96	전	4/5	구·애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 주공아파트 ***·***	구·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60 명가보고길 가·***	근저당권
									1/5	구·영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			
20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05-1	340	705-1	340	구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4-1	228	64-3	43	전	1/1	장·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향대로761번길 **·*			
22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64-2	33	64-2	33	도	1/1	장·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향대로761번길 **·*			
23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6-2	139	76-2	139	도	1/1	공	강화군			
24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7-1	162	77-1	162	도	1/1	공	강화군			
25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6-3	294	76-5	95	전	1/1	장·형	강화군 양사면 전향대로***번길*	강****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흥리 ***·*(양사지점)	근저당권
26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20-4	292	산20-4	292	임	1/1	공	강화군			
27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20-5	95	산20-5	95	도	1/1	공	강화군			
29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20-2	298	산20-2	298	도	1/1	공	강화군			
30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6-1	172	76-4	13	대	1/1	장·형	강화군 양사면 전향대로***번길*			
31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20-3	298	산20-8	243	임	1/1	안·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향대로 ***			
32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16-3	788	산16-4	68	임	1/1	임·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00번길 **·*			수유자변경
									1/5	유·창	인천광역시 남구 안하로405번길10, *동***호(광교동,연성빌라)			
33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19-3	198	산19-8	49	임	1/5	유·익	인천광역시 서구 탁목로34번길 24-1, ***동 ***호(삼곡동,엘리스타운)			
									1/5	유·국	인천광역시 중구 문중로48번길 **·*(문남동)			
									1/5	유·열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번길 **			
									1/5	손·상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2922, ***동***호(사농동,춘천뉴시티크아루)			

보상계획(변경) 열람공고 내역(물건)

○ 공사명 : 군도9호선(평화전망대 입구 일원)신형개량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1	양사면	철산리	76-3	수목	대추나무	2	주	장*형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번길*	강*****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흥리 ***-(양사지점)	근저당권	
2	양사면	철산리	산20-3	수목	뽕나무	1	주	안*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				
3	양사면	철산리	산20-3	수목	모과나무	1	주	안*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				
4	양사면	철산리	산20-3	목재가건물	닭장	1	식	안*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				
5	양사면	철산리	산20-3	물탱크	1ton	1	식	안*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				
6	양사면	철산리	산20-3	간판	0.6~1.2	2	식	안*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				
7	양사면	철산리	산16-3	수목	밤나무	1	식	우*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00, ***동 *****호				

## 의 건 서

사 업 명 : 군도9호선(평화전망대 입구 일원)선형개량공사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2026. .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강 화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